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81

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허 영·윤준병·박상혁

임호선 · 김문수 · 전재수

장철민 • 위성곤 • 황 희

홍기원 • 한정애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경찰공무원법」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 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·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) 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-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
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2(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
	격 등 취소) ① 누구든지 군인
	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
	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
	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
	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
	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
	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
	을 취소할 수 있다.
	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
	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
	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
	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
	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
	<u>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
	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
	여 효력이 발생한다.